

研究論文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

장 박 진**

I. 문제제기	<참고문헌>
II. 변화과정 분석	<국문요약>
III. 결론	

I. 문제제기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에 얽힌 과거처리 문제 중 피해보상의 문제는 바로 핵심이었으며 그만큼 선행연구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하지만 동 교섭이 배상에서 청구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상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타결된 결과, 여태까지의 관심은 주로 그 처리방식의 변화 원인 규명에 모아져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극동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일평화조약 참가 좌절이라는 시각은 동 교섭이 배상에서 청구권으로 바뀌어야 했던 원인을, 또 박정희 정권의 군사독재성의 강조나 한국의 경제적 궁핍을 부각시키는 논리는 청구권에서 경제협력방식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을 각각 짚어보려고 한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런 변화에 무게를 둔 연구에는 한일간의 특수한 과거관계의 청산이

* 본 논문의 수정에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일교포인 저자의 어색한 문장 교정에 도움을 주신 서만식 씨(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 석사)께도 감사드립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한일현대관계사 전공(bakjin822@hanmail.net).

그 해결방식의 변화에 따라 질적인 ‘단절’을 겪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예컨대 선행연구 중 피해보상 교섭을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한 오오타(太田)는 한국측 배상획득의 움직임을 “식민지배의 청산을 촉구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반면에 청구권 방식에 대해서는 “식민지배·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의 청산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소위 김·오히라(大平) 합의로 인해 확립된 경제협력 방식에 따라 “식민지배·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상 문제 및 그 역사인식의 문제는 모두 그 표현(=재산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봉인되기로 되었다”고 서술하여 명목변화에 따른 피해보상 교섭의 질적인 ‘단절’을 천명했다.¹⁾

하지만 명목변화에 따른 피해보상 교섭의 질적인 ‘단절’의 판단은 그런 변화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그 변화과정을 관통한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일회담이 14년 이상에 걸쳐서 더구나 ‘4·19’, ‘5·16’이라는 극적인 정치변동을 통해서 이승만, 장면, 박정희라는 세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교섭의 변화과정을 각 정권의 속성과 맞물려 이해하려는 경향이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회담 관련 문서가 공개된 오늘날 그런 전통적인 틀을 넘어 사실관계와 논리에 기초해서 각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석·평가하여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이룩하는 것은 한일회담 관련 연구에 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저자 역시 선행연구에서 과거청산의 소멸과정으로서 동 피해보상 교섭을 포괄적으로 분석했으나²⁾ 거기에서는 동 교섭의 연속성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측이 공개한 공식문서에 주로 의거하면서 그 해결방법과 액수 교섭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간의 피해보상 교섭의 연속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양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바로 배상·청구권·경제협력이라는 해결방식의 표면적인 변화와 달리 동 교섭의 해결방법에는 일관성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피해보상 교섭의 연속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며, 또 액수의 분석 역시 그런 명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 교섭이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는

1) 太田修, 『日韓交渉 請求權問題の研究』(クレイン, 2003) 중 배상에 관해서는 58쪽. 청구권에 관해서는 78쪽.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215쪽에서 각각 인용. 또 인용 부분 중 (=)를 단 보충설명은 저자가 했음.

2) 張博珍, 「韓日會談에서의 植民地關係 清算研究: 清算消滅의 政治論理를 中心으로」, 韓國外國語大學 國際地域大學院 博士學位論文(2007).

데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위 분석을 통해서 여태까지의 지배적인 이해와 달리 동 문제의 해결방식의 변화가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에 질적인 ‘단절’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II. 변화과정의 분석

1. 이승만 집권기의 변화

1) 배상에서 청구권으로

대일 배상요구에서 청구권방식으로서의 변화는 이승만 정권이라는 동일한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동 피해보상의 처리문제가 바로 배상에서 청구권 문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 변화 자체를 일종의 질적인 ‘단절’로 보게 됨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따라서 우선 본고는 문제의식에 따라 배상에서 청구권으로의 변화의 의미와 그 변화에 숨어 있는 연속성을 짚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려 한다.

한일회담 개시 전에 새롭게 수립된 이승만 정부가 일찍부터 배상방식으로서 한일 양국간의 피해보상 문제를 처리하려 했던 것은 한일회담 연구에 있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국정부가 1949년 9월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는 바로 ‘배상’이라는 표현을 씌으로써 해결방식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배상은 그 당시의 국제법상 교전에 따른 패전국의 승전국에 대한 피해보상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배상 방식으로 인한 해결은 결국 한국이 대일전승국으로서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동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배상으로 인한 문제 해결 방식의 좌절에 따라 그 후 동 교섭은 청구권방식으로 변한 결과, 당초의 배상방식이 피해처리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것 역시 결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측이 능동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배상방식은 한국측이 1910년에 시작된 불행한 역사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전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동 문제를 연합국의 대일평화조약의 일환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서 도출된 공여지책이라는 소극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작성한 1949년 가을경은 그 후 한일간의 피해보상 교섭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될 대일평화조약의 초안 자체는 아직 불투명한 시기였다.³⁾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미 그 시점에서 대일전승국으로서 그 후 대일정책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불행하게도 과거 한일합방을 승인한 국가였다는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 조건 가운데 일본의 지배에 대한 원천적인 불법성에 따라 한국이 그 피해보상의 기회를 따로 찾는 것은 법적인 근거와 한국측의 정치적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한국정부는 대일평화조약을 둘러싼 교섭 속에서 대일평화조약 서명국 참가요구 이외에 대마도의 귀속이나 일본의 재군비에 대한 우려들을 거론하거나,⁴⁾ 서명국 참가 좌절 후에도 평화조약 한국 관련 조항의 수정요구를 한 사실들이 있다. 그러나 동 요구는 문서로 2조(a)에 독도포기, 4조(a)에서 재한일본인 재산 몰수 및 그 한국으로의 이양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 그리고 9조에 별도의 협정 체결까지 막아더라인은 존속시킬 것들을 명기할 것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⁵⁾ 합방조약 원천 무효라는 근본적인 요구를 공식 제기한 사실은 없다.⁶⁾ 또 이것은 『대일배상요구조서』의 네 가지 대항목 중 그 피해의 상징인

3) 塚元孝, 「韓国の対日平和条約署名問題: 日朝交渉 戦後補償問題に関連して一」, 『レファレンス』, no.494(1992), 96쪽에서는 대일평화조약 초안은 1947년 3월부터 몇 차례 작성되었다고 하나 대일평화조약의 본격적인 교섭의 주역인 덜레스(Dulles)가 국무장관 정책고문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일강화에 관한 각서를 미국무성에 제출한 것이 49년 6월 6일의 일이며 또 대일강화 7원칙이 나온 것이 50년 9월 22일이니만큼 49년 가을 시점에서는 조약내용 자체는 분명히 정해진 단계가 아니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694.001/7-95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in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Emmon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VI, Asia and the Pacific, part 1*(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pp. 1183-1184.

5) "[attachment] The Korean Ambassador(Yang) to the Secretary of State," *ibid.*, p. 1206.

6) 흥미로운 것은 주일대표부는 1950년 10월 본국에 대한 청훈의 의미도 담은 연구 『한일회담 예비 회담(1951.10.20~12.4), 자료집,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근거, 1950』에서 강제로 인한 조약은 무효라는 논리로 합방조약 원천 무효론에 선 대일교섭을 건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건의가 그 후 본국정부에 의하여 대미교섭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일평화조약이라는 틀에서는 한국이 합방조약 무효라는 입장에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음을 역

인적·물적 피해에 관한 제3항이 1937년의 중일전쟁 이후의 보상요구로 되어 있었던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측이 배상방식으로서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불법지배에 따른 독자적인 청산의 가능성이 없는 조건 아래 대일전승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해야만 했던 입장에서 도출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러나 이 선택은 원래 양국간의 개별적인 문제인 대일 보상요구를 연합국과 일본의 전후 처리의 틀 안에서 처리해야 할 단서를 당연히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대일 배상요구라는 ‘적극적인 자세’는 실은 연합국의 대일정책에 그 실천여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수동적인 자세를 동시에 의미한 것이었다. 결국 미국의 극동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전쟁 책임을 회피시키는 구조 속에서 한국은 대일전승국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 그로 인해 양국간의 피해보상의 문제는 한일회담에서는 평화조약 4조(a)의 규정에 따른 상호재산권 처리의 문제로서 시작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배상방식에서 청구권방식으로서의 변화는 한국의 과거처리에 관한 독자적인 판단결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미국의 관여라는 극동에서의 구조적 연속성이 가져다준 변화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배상이건, 청구권이건 간에 그 명목으로 인한 해결은 이승만 정권이라는 개별적인 속성이 반영된 선택 결과라기보다 그 당시 한국에 들어선 정권 모두에게 주어진 국제정치 상의 구조적 현실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배상에서 청구권방식으로서의 변화가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교섭내용에 관해서 한국측에 큰 수정을 요구하게 됨은 사실일 것이다. 배상은 전승—패전 국가간이라는 비대칭적인 역학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해결에는 정치적인 판단이 짙게 개입할 수 있는 데 반해 재산의 권리소유자(rightful owner)에 대한 반환(restitution)을 뜻하는⁷⁾ 사권의 행사인 청구권처리는 바로 재산소유에 관한 법적 근거나 자료 증빙이라는 보다 실무적인 절차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런 걸로 나

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배상(reparation)과의 이런 구별은 실제 한일회담에서도 나와 있다. 예컨대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1-3차 한일회담 결렬경위, 1953.10~12』, 1272쪽. 한일회담 공식문서에는 2-3개 정도의 쪽수 표기가 있으므로 이하 쪽수는 인용자가 임의로 택해서 하나만 기술하도록 한다.

타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측 배상 요구와 청구권 요구를 필요 부분만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⁸⁾

<표 1> 『대일배상요구조서』와 ‘대일8항목요구’

『대일배상요구조서』	대일8항목요구
제1부: 현물반환의 부 -지금(249톤633키로198.61글람) -지은(89톤112키로205.12글람) -선박, 지도, 기타	제1항: 한국으로부터 가져간 고서적, 미술품, 골동품, 기타 국보, 지도원판, 및 지금과 지은을 반환할 것. 제2항: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 총독부 책무를 변제(辨濟)할 것.
제2부: 확정채권의 부[17,429,362,305엔 및 4,000,000 상해(上海) 불] -일계 통화, 일계유가증권, 상해불화, 보험금, 은급, 기타미수금, 체신관계 특별계정	제3항: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金員)을 반환할 것. 제4항: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을 반환할 것.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12,122,732,561엔)	제5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을 변제(辨濟)할 것.
제4부: 일정부의 자가 수탈에 의한 손해(1,848,880,437엔)	제6항: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제7항: 전기 채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생(生)한 채과실을 반환할 것. 제8항: 전기 반환 및 결제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표 1>을 보면 큰 틀로서 알 수 있듯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 참가 좌절로 인하여 배상요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정부가 대일청구권으로서 요구한 것은 사실상 『대일배상요구조서』에 있던 항목 중 제1항목과 제2항목이었다. 즉 동 조서 중

8) 『대일배상요구조서』에 관해서는 공식문서에서는 『제4차 한일회담(1958.4.15~60.4.19) 청구권관계 자료, 1958.』, 608~609쪽에서 저자가 정리했음. 다만 동 자료에는 제1부 현물반환요구의 부 중 지금, 지은의 수치는 없으므로 太田修, 앞의 책, 52쪽에서 인용했다. 또 ‘대일8항목요구’는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차~3차, 1953.5.11~6.15』, 1119~1120쪽에 수록.

의 제1항목은 그대로 청구권 8항목 중의 제1항으로서, 그리고 동 제2항목을 제2항목에서 제6항목으로 세분화시켜 작성한 것이 ‘대일8항목요구’였다. 바꿔 말하면 배상 수취 자격 상실에 따른 삭제항목은 제3부와 제4부를 뜻하는데 이것들은 전 시 피해에 해당하는 보상 항목들이 만큼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것이었다. 이 항목들이 삭제된 것은 양국이 교전관계에 있지 않았거니와 합방조약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부터 귀결된 것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 삭제가 의미한 것은 민사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적 해결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배상요구 시점에서 그 요구항목은 정치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부분과 실무적인 해결방법이 적용되는 청구권 부분⁹⁾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상 수취 자격 상실로 인해 평화조약 4조에 근거한 청구권교섭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런 실무적인 방법의 적용부분과 정치적 해결 방법의 적용부분의 병용(併用)이라는 구성은 변함이 없었다는 점이다.

청구권교섭은 한국측이 ‘대일8항목요구’를 1951년 2월 20일 제출함에 따라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일단 토의되기 시작했으나, 동 회담이 일본측의 소위 ‘역청구권’ 주장으로 인해 진전이 없이 결렬되고 말았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측으로부터 ‘역청구권’이 정식하게 제기된 제5차 청구권분과위원회 이전에 이미 한국측은 제1항목에 관해 “본 항은 전부 정치적인 것이다”¹⁰⁾고 말하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과의 법적 견해 차이로 인해 그 실무적인 반환(restitution)이 어려울 금, 은, 각종 문화재 등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즉 배상 자격 상실에 따라 표면적으로 일어난 대일 보상요구 범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의 청구권 문제 해결에는 당초부터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9) 예컨대 주일대표부는 『대일배상요구조서』 제2부에 해당하는 ‘확정채권’에 대해 이 종류의 재산권은 일본의 패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므로 대일평화조약 전이라도 청구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10.20~12.4), 자료집,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 58쪽.

10) 제3차 청구권분과위원회에서의 발언.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2.20~4.1』, 322쪽.

방법을 부분적으로나마 적용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강조했듯이 청구권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의 병용이라는 방법은 배상요구 시점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배상이건, 청구권이건 간에 그 명목 변화에 따라 문제의 처리방법에 질적인 차이가 생겼다는 등의 사실은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배상방식이면 그 처리방식에 따라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청구권이 됨으로써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등의 이해는 원천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견해라고 해야 하겠다.

물론 『대일배상요구조서』 제3항목과 제4항목의 삭제에 따라 청구권 요구는 그 항목 상 피해보상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피해보상의 대상은 원래 1910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배상방식 역시 요구항목이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청구권방식의 범위와 단지 연속적인 차이만 있는 것에 불과했다. 또 이하 논하듯이 가령 한국이 그 후 배상 수취가 가능한 나라가 되어도 대일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교섭해야만 했던 한국이 그 요구 액수에 관해 청구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추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들을 생각할 때 ‘배상’, ‘청구권’이라는 명목 차이에 따라 과거처리에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함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¹¹⁾ 어쨌든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일본측의 ‘역청구권’ 주장이 터지자 그 후 이승만 집권기의 청구권교섭에 있어서 본고의 문제의식과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었다.

2) 액수의 변화

한편 이승만 정권 하의 배상에서 청구권이라는 해결방식의 변화가 액수에 관해 어떤 차이를 가져다주었는가? 한국정부가 <표 1> 『대일배상요구조서』에 담은 액수는 31,400,975,303엔+4,000,000상해(上海)불, 합계 약 24억780만불 가량이었다.¹²⁾ 그러나 우선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후의 액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만약 한

11) 사실 한일회담 당초부터 교섭 당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유진오는 반대로 ‘대일8항목요구’에도 반환(restitution)적인 요구 이상의 보상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俞鎮午·劉彰順, 『對談: 交渉十年 會談 六回の 内幕』, 《思想界》, 緊急増刊号(1964), 34쪽.

12) 이하 엔화와 미불 환산은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15엔 : 1불로 했다. 그리고 당시 지금가격은 1그램 당 1.2345불(약 3억817만불), 지은은 0.0251불(약 223만불)로 계산했다. 지금, 지은의 가격

국이 대일평화조약에서 대일전승국이 되었으면 동 액수는 실제로서 획득 가능한 액수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물론 법적으로 대일전승국이 되었다면 그 후 대일 교섭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측면이 있던 것은 사실이다. 배상은 일정한 청구근거와 완전히 뺄 수 없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전승·패전국 간이라는 정치적인 역학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이후 청구권교섭으로서 실제 겪어야 했던 요구근거 및 증빙서류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배상 수취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극동정책의 귀결로서 마무리 짓게 된 대일평화조약으로 가능해질 것이었다. 대일평화조약은 제14조에서 대일전승국인 연합국에 대해 자국 내 일본관련 재산의 몰수와 함께 역무배상의 권리만을 규정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지극히 억제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런 대일 유화적 조항에 반발하여 그 후 개별적 배상교섭을 벌인 동남아 각국의 대응에 보이듯이 한국 역시 따로 추가교섭을 벌일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제2차 대전 시 한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교전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 따라 일본 측이 전투행위에 따른 약탈, 파괴 행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 아래¹³⁾ 더구나 이미 상당한 액수의 재한일본인 재산이 한국측에 이양되었었던 것을¹⁴⁾ 생각할 때 가령 한국이 연합국에 참가했다고 해도 한국정부가 49년 시점에서 준비한 약 24억불 가량의 액수를 그대로 받아낼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¹⁵⁾

은 佐々木隆爾, 「アジア太平洋戦争の戦後補償のために支払った金額」, 『日本史研究』, 388号(1994), 201쪽에 의거했음.

- 13) 제3차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에서의 발언.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1~3차 한일회담 결정경위, 1953.10~12』, 1261~1262쪽.
- 14) 물론 이것은 1945년 12월의 군정령 33호에 의한 미군정에 의한 몰수와 1948년 9월의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양규모는 동 협정에는 기술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액수는 알 길 없다. 하나의 예로서 1945년 8월 시점에서 SCAP의 민간재산관리 제외재산국이 정리한 일본의 제외재산 조사에 의하면 일본이 남한지역에 갖고 있던 법인, 개인, 정부자산(육·해군 분을 제외) 규모는 22억7553만5422불이었다.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Japanese External Assets, 1945.” 大蔵省財政室編,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20卷(東洋經濟新報社, 1982), 433頁. 물론 이것은 그 모두가 몰수·이양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대일 요구액수가 약 24억불 정도임을 생각할 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이양되었다고 판단된다.
- 15) 이 근거의 또 하나의 이유로서 일본과 배상 교섭을 통하여 가장 많은 액수를 타낸 필리핀이 배상 5.5억불 그리고 경제협력 2.5억불, 합계 8억불이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필리핀과 비교해 35년에 이르는 한국의 피해를 강조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으나 배상은 제2차 대전 시의 구체

따라서 24억불을 기준으로 삼아 이후 줄어든 액수의 변화가 마치 배상에서 청구권 그리고 경제협력방식으로서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출발부터 옳지 않다. 또 반대로 배상 수취 자격 상실에 따라 요구항목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진 청구권교섭에서의 액수의 움직임 역시 이하 논하듯이 배상 요구 시의 액수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제1차 한일회담 이후 한국정부가 구체적으로 청구액수를 어떻게 정하여 또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최종 타결액수가 얼마였는지 등은 분명하지 않다. 한일회담 당초부터 실무자로서 참여한 김동조의 회고에 의하면 이승만 집권기 청구권 액수에 관한 진지한 검토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¹⁶⁾ 일본의 ‘역청구권’ 등으로 인하여 청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교섭 진전의 전망 자체가 어두웠던 시기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교섭전략 등은 일체 세우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김동조의 그런 증언과 달리 소위 ‘구보타(久保田) 발언’을 계기로 장기 중단 상태에 빠진 후의 한일회담 재개교섭에서는 일본의 ‘역청구권’ 포기 약속에 따라 한국측의 청구권만이 토의 대상으로 된 무렵부터 액수에 관한 서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공식적으로나마 일본의 대한청구권 포기가 사실상 전달된 56년 후반기¹⁷⁾ 9월 24일 경무대에서 이승만이 당시 주일대표부에서 실무교섭을 맡은 김용식에게 직접 지시한 훈령은 제1차 한일회담 당시 요구한 8항목 요구 중 제1항목에 해당하는 지금(地金)·지은(地銀), 문화재, 기타에 관해서 4억불 가량을 요구할 것이었다.¹⁸⁾ 이듬해 57년 초에는 한국정부는 재개회담에 임할 청구권 방침으로서 <표 2>와 같은 요구리스트를 작성했다.¹⁹⁾

적인 교전관계에 따른 피해 보상이 주된 것이니만큼 35년이라는 지배관계 자체는 대일평화조약에 의한 배상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6)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中央日報社, 1986), 97~98쪽.

17) 필자가 확인한 한 1956년 8월 23일의 김용식과 일본외무성 나카가와(中川) 아시아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카가와 국장은 일본정부는 자신의 청구권을 주장할 의도가 없음을 전하고 있다.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1 경무대와 주일대표부 간의 교환공문, 1956~57)』, 1550쪽.

18) 위의 문서, 1562쪽, 동 문서는 추후 손으로 약간의 문장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요지에 변화는 없다.

19) 위의 문서, 1627~1628쪽. 또 동 리스트 제4항과 제5항에 관해서는 당초 인쇄된 수치가 손수로

<표 2> 1957년 초에 작성된 한국정부의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 방침

제1항	한국에서 가져간 이하 물건들 -고서적 및 문서(7,834점), -미술품, 정밀 품(curious), 기타 국보, 지도 원판 -지금(249,633,198,61그램) -지은(89,076,205.12그램)
제2항	1945년 8월 9일 현재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채무: 5,634,722,252.54엔(추계)
제3항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 5,719,421,602.85엔(추계)
제4항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재일본 재산: 2,983,165,878.63엔(추계)
제5항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소유하는 일본의 기관 발행의 국·공채·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채무(군속으로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 기타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의 대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권: 14,618,820,025.23엔 이상(추계)
제6항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의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 소유의 법적권리를 인정할 것: 25,757,730.19엔 이상(추계)
제7항	1945년 8월9일 현재 한국치적선 중 이후 일본영해에 위치한 선박 및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영해에 위치한 선박 중 이후 일본영해에서 발견된 선박: 177척
제8항	위 재산 및 청구권부분에서 생긴 것 및 앞으로 생길 모든 이자 분

위의 ‘대일8항목요구’는 제1차 한일회담 당시 한국측이 제시한 8항목 요구와 비교하면 당초 없었던 제7항 선박 반환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 점, 또 제1차 회담 당시의 요구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옮긴 대신 당초의 요구에 명시되었던 지불개시 시기에 관한 제8항의 내용을 삭제한 점 등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박문제 는 이미 회담의 의제였다는 점, 그리고 삭제된 개시 시기의 문제는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제1차 한일회담 당시의 한국측 요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이상의 요구항목 중 제2항에서 제6항까지를 합한 합계는 289억8188만7489.44 엔, 약 19.32억불이었다. 이 수치는 한국이 평화조약 서명국 참가를 기대하고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 중 제2부 확정채권의 부와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제4부인 일정부의 저가 수탈에 의한 손해 분을 합한 총액 314억97만5,303 엔, 약 21억불과는 그 액수에 관해 2억불 가량의 감소를 의미하나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또한 제1항 중 지금·지은의 반환요구의 중량은 『대일배상요구조서』 당시의 수

수정돼 있으므로 <표 2>에서는 그 수정된 액수만을 기술했다.

치가 그대로 유지돼 있으므로 이들 액수가 각각 지금 약 3억817만불, 지은 223만 불, 합계 약 3억1000만불임을 감안하고 기타 제1항 중의 문화재 등의 가치를 고려하면 이 수치 역시 위에서 말한 56년 9월 24일의 이승만의 지시에 있던 4억불 요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 57년 초 이미 일본의 대한청구권 포기가 확정되며 회담 재개 교섭이 본격 화됨에 따라 회담의 조기 재개가 기대되던 무렵, 한국정부가 교섭을 위하여 내부 적으로 작성한 청구 액수는 『대일배상요구조서』 시대의 액수와 거의 일치하는 약 23억3200만불(19.32억불+4억불) 가량이었다. 따라서 배상에서 청구권 명목으로 바뀐 뒤에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내부적인 청구 액수는 실은 배상요구 액수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배상에서 청구권 방식으로의 변화가 액수에 대 해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이상의 사실들은 그 액수가 당시의 한국측의 진정한 요구액이었음을 단순히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4차 한일회담에서는 일본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청구권교섭이 58년 5월에 세 차례만 열렸을 뿐, 더구나 그 회의에서는 문화재 반환 등의 토의만이 이루어졌고 액수에 관한 실질적인 토의는 전혀 없었다고 추측되 므로²⁰⁾ 실제 요구 액수에 관해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58년 12월 재개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에서 제1차 한일회담 당시 제출하던 ‘대일8항목요구’ 중 이하 제1항목부터 6항목까지의 해당부분을 제안할 것 을 훈령한 문서를 12월 초에 보내는 등 새로운 움직임을 일부 보이기 시작했다.²¹⁾

- 한국으로부터 가져간 지금·지은
- 1945년 8월 9일 현재 일본정부의 대 조선총독부 채무
-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전
-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점)를 가진 법인의 재일재산
- 한국 자영업인 또는 한국법인이 가진 일본당국이 발행한 일본국채·공채, 일 본은행권, 기타 통화,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보상의무, 또 일본국,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 및 한국 법인의 기타 청구권

20) 동 회의 기록은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차~3차, 1958.5.20~12.17』, 548~570쪽에 수록.

21) 위의 문서, 577쪽.

□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의 법인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또는 기타 증권에 대한 합법성

하지만 위 6항목의 제시 지시와 달리 동 훈령은 액수에 관해서는 나중에 보낸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²²⁾ 57년 초의 <표 2>에 있던 내부 작성 리스트의 요구 액수는 이 시점에서 정식 요구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4차 한일회담에서의 청구권 토의는 다음 12월 17일 제3차 소위원회에서 한국측이 문화재를 뺀 청구권 8항목 토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일본측이 검토해서 답한다는 대답을 한 것을²³⁾ 끝으로 이상의 진전이 없었으므로 제4차 한일회담까지 정직한 요구액수가 일본측에 제시된 일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한국측 내부에서는 1959년 1월 29일자로 작성된 훈령에서 일본에 대한 요구총액이 1,929,220,000불임이 명시되어 있다.²⁵⁾ 시기적으로 보아도 이 수치가 위에서 말한 58년 12월의 훈령에 있던, 이후에 보낼 요구 액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추측이 맞으면 이 시점에서의 한국측 요구 액수는 57년 초에 작성된 약 23억3200만불에 비교해 약 4억불 가량의 추가적인 삭감을 뜻하나 그 감소의 이유 및 내역 변화 등은 알 수 없다.²⁶⁾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상기 액수 역시 이승만 시대의 최종 요구액이 아닐 가능성이 지극히 높았다는 점이다. 동 훈령에서는 동 요구액은 Alternative A로 되어 있으며 Alternative C가 최종 타협선임이 따로 지시되어 있

22) 위의 문서, 같은 쪽. 그러나 동 훈령이 동시에 각 항목별에 관한 총액수 및 수량에 관해서는 제시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을 보면 이미 한국 측 내부에서는 액수가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동 훈령이 각 항목의 소항목(sub-item)에 관한 액수 또는 수량을 제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23) 위의 문서, 589-590쪽.

24) 다만 제4차 한일회담 전반기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임병직은 분과위원회에서의 대립점의 하나가 한국측의 청구 액수 3억불 이상에 대해 일본측의 4천만불 내외의 추산에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林炳稷, 『林炳稷 回顧錄』(女苑社, 1964), 515쪽. 그러나 이것은 회담 공식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5)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1958-60』, 1409쪽. 다만 동 훈령문서에는 그 벽두 “not adopted”라는 손으로 인한 기입이 있으므로(같은 문서, 1404쪽), 동 수치는 정식으로 훈령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6) 다만 액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만약 57년 초의 약 19.32억불이 그대로 1,929,220,000불에 해당한다면 이 4억불의 감소는 단지 제1항목을 뺀 액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27) 즉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최종 타협 액수를 다른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수치가 명시된 자료 Annex III은 공개된 한일회담 공식문서 중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의 한국정부의 최종 요구액수가 얼마였는지 자료를 통한 최종확인是不可能的하다. 다만 당시 한일회담의 교섭에 참여한 유태하의 4억불, 김유택은 3억불 이상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28) 적어도 산출되어 있던 19억불 가량의 액수가 실제 요구 액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확인 가능한 이승만 집권기의 액수의 움직임은 이상이나 표면적으로 약 24억불 가량으로 출발한 청구 액수가 최저 4억불 가량까지 줄어든 것을 보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결코 배상에서 청구권방식으로 바뀐 결과 일어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술했듯이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의 경제적인 부담삭감을 규정한 미국의 극동정책을 배경으로 한다면 전쟁 당시의 공헌이 전무하며 또 교섭 상의 역량이 미흡한 당시의 한국이 배상요구로서 작성한 24억불 가량의 액수를 그대로 수취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 역으로 청구권 명목으로서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맨 처음 요구 액수 역시 배상과 큰 차이가 없는 액수이었다는 점,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제 받아야 할 최종 액수라기보다 교섭 상의 제시 액수에 불과했다고 풀이 된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액수의 변화는 명목변화에 따른 청구 항목의 차이로 인한 질적인 변화라기보다 일본과의 교섭 속에서의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액수 삭감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즉 액수 면에 관해서도 배상과 청구권간에 큰 ‘단절’을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2. 장면 집권기의 변화

1) 청구권방식의 후퇴

결국 이승만 집권기에 진전이 없었던 청구권교섭은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인한

27)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1958~60』, 1409쪽.

28) 유태하의 증언은 柳泰夏, 「李라인과 對日會談」, 權五琦(편), 『現代史주역들이 말하는 정치증언』 (東亞日報社, 1986), 347쪽 및 363쪽. 한편 김유택의 증언은 한국일보사, 『財界回顧(10): 歷代金融機關長篇(II)』(한국일보사출판국, 1981), 170쪽.

극적인 정권 교체에 따라 큰 진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사실 청구권에 관해서 장면 집권기에는 비록 5·16쿠데타로 인해 제5항목 도중에서 끝나기는 했으나 이승만 시대에는 없었던 ‘대일8항목요구’에 관한 항목별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연 그 진전은 한국측 정권 교체에 따른 방침 변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일단 일본측의 ‘역청구권’의 포기가 결정되고 나서 따라서 장면 집권기의 교섭과 같이 한국의 일방적인 청구권 토의가 약속되고 재개된 제4차 한일회담에서는 이승만 정부 역시 확실히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외무부는 58년 7월 오무라(大村)수용소에 있던 북한 귀국 희망자 석방을 계기로 표면화된 대립 가운데서도 10월 중순 주일대표부에 보낸 훈령에서는 정부는 모든 회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일본측과 최종해결(showdown)을 행할 의사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²⁹⁾ 이런 한국정부의 지령은 당시 교섭 당사자이던 유태하의 증언과도 일치한다.³⁰⁾

하지만 제4차 한일회담은 진전이 없었다. 물론 그 이유는 ‘북송’사업에 대한 양국 대립이 크게 작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세부적으로 볼 때, 동 문제로 말미암아 양국의 본격적인 대립이 일어난 것은 59년 초의 일이었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년 4월에 시작된 제4차 한일회담에서는 청구권 토의는 이미 언급했듯이 5월 및 12월에 각각 세 차례씩 진행된 것뿐이며 더구나 그 토의 역시 일본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진전된 일은 없었다. 즉 장면 집권기의 교섭과 같이 일방적인 대일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자세를 보이던 이승만 집권기의 교섭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것은 역으로 그 진전이 한국측 정권 교체에 따른 대일 교섭의 방침 변화에 기인했다기보다 결국 일본측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9)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1958-60』, 1323쪽.

30) 유태하는 이승만은 1959년 3월 한일회담의 참된 타결을 결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柳泰夏, 앞의 글, 347쪽 및 363쪽. 그러나 그 이유는 3월 26일의 이승만의 생신 때 본인을 직접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므로 이승만이 최종 타결의사를 그 이전에 갖고 있었음은 틀림없다. 동 증언은 같은 책, 348쪽.

31) 外務部 政務局, 『韓日會談略記』(1960), 211쪽.

그것은 한국측 정권 교체 이후 일본측이 표시한 “우리나라가 다음으로 올 한국의 신 정권에 큰 기대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연지사”³²⁾라는 기대감의 표현과 무엇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킨 9월의 방한 사절단 파견 시 이케다(池田) 수상 자신이 같이 방한할 것을 정식으로 제청했었다는 일본측의 적극적인 자세에서 확인 가능하다.³³⁾ 아무튼 일본측 방침변화에 따라 청구권 토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제5차 한일회담 개시를 앞두고 1960년 10월 무렵 장면 정부가 세운 청구권 방침은 사법상의 변제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정치적 해결도 고려한다는 것이었다.³⁴⁾ 또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1961년 1월경 작성된 대일청구권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된다.³⁵⁾ 즉 위 방침과 <표 3>을 감안하면 알 수 있듯 장면 정권은 요구근거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보다 세밀히 현실적인 검토를 가하여 청구권으로서 대일 청구가 가능한 것과 그것이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그 부분에 관해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 했다고 판단된다. 환언하면 이승만 정부 당시 그 ‘대일8항목요구’ 중 제1항목에 한정돼 있었던³⁶⁾ 정치적 해결의 적용범위를 사실상 보다 확장하려고 한 것이 장면 정권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장면 정부가 작성한 1961년 1월경의 대일청구권 요구 내역

	요구액	반환요구 근거	증거 자료
1. 지금, 지은	지금: 약 2억5천만그램(25만 kg) 지은: 약 9천만그램(9만 kg)	약	충분 (단 지금, 지은은 일 당국에서 약 5억6천만엔의 대금을 국제 등으로 지불하고 반출한 것이므로 우리 측에서 전기 대금을 환불하고 반환받

32) 外務省, 『わか外交の近況』, 第5号(大蔵省印刷局, 1961), 63頁.
 33) 이 사실은 정일형 당시 외무부장관의 증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일형, 「왜 朴政權의 韓日會談을 反對했나」, 《新東亞》, 1984년 10월호, 275쪽.
 34)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 보고, 1960.10-61.5』, 2027쪽.
 35)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13차, 1960-61』, 854-861쪽.
 36)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적으로 확인 가능한 제1차 한일회담 시의 이야기며 그 후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정치적 해결범위의 확장이 되었을 터이라는 측면에서 장면 집권기의 움직임과 같다.

			아야 할 것임)
2.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의 반환요구 총액: 약 56억8천만엔			
1) 체신부관계 채권	약 21억엔	강	대부분 완전
2) 1945.8.9 이후 일본이 한국내 각 은행에서 인출 한 금원	약 26억 7천만엔	약	미약(微弱)
3) 일본국고금 계정 채권	약 9억엔	강	충분
4) 조선총독부의 재일 재산	약 1천만엔	요(要) 검토	충분
3. 1945.8.9 이후 일본으로 불법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요구 총액: 약 8억9천만엔			
1) 조선은행 본점으로부터 재일 지점에 송금된 금원	약 2억3천만엔	강	충분
2) 재한일본 계 은행 지점으로부터 재일본점에 송금된 금원	약 6억6천만엔	강	충분
4. 한국 내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요구 총액: 약66억7천만엔			
1) 특수금융기관의 재일재산	약 64억7천만엔	약	충분
2) 기타 법인의 재일재산	약 2억엔 추산 (전부 미조사 상태에 있음)	약	미조사 상태
5. 각종 유가증권, 피징용 한인 미수금,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및 개인에 대한 채권 등의 반환요구 총액: 약 232억6천만엔			
1) 일본유가증권(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사채, 정부기관사채, 일반사채, 일반주식)	약 74억5천만엔	증권의 내용에 따라 상이	대부분 완전
2) 일본 계 통화	약 16억엔	강	충분
3) 피징용 한인 미수금	약 2억4천만엔 (추산)	확실(일본 측도 동조)	불확실
4) 전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 보상	약 132억엔 (요 재검토)	강	약
5) 한국인의 대일본정부청구(은급)	약 3억엔 (이남 분만)	요 검토	충분
6) 한국인의 대일본 법인 청구 (보험액)	약 4억7천만엔 (추산)	강	요 조사
6. 한국인 소유 일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	총 약 2천만엔	-	-

이 의미에서 장면 정권이 이승만 집권기의 교섭과 비교해서 낡은 변화는 단지고 적용범위의 변화이지 해결방법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측이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은 장면 정권 수립에 따라 동 문제의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임은 틀림없다. 사실 제5차 한일회담 당시 중요한 교섭무대로 된 수석 간 비공식회담에서 일본측은 수차례 청

구권방식에 의한 해결의 어려움을 부각시켰다.³⁷⁾ 무엇보다 장면 집권기의 마지막 교섭이던 1961년 5월의 일본측 국회의원단 방한에 동행한 이세끼(伊関) 아시아 국장은 이케다 수상의 한국측 견해의 타진이라는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실험적 토의(Exploratory Talking)” 형식이지만 무상원조로 인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³⁸⁾

결국 제2공화국은 5·16 쿠데타로 인해 무너진 결과 경제협력방식에 의한 해결에 매듭을 짓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측의 경제적인 궁핍, 경제계획의 진전과 외자의 필요성,³⁹⁾ 미국의 자세, 일본측의 교섭 우위 등을 고려할 때 이하 고찰하는 박정희 정권 하의 교섭 결과와 별 다른 바가 없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2) 액수의 변화

한편 액수에 관해서 장면 정부는 <표 3>에 있는 요구 총액수를 약 366억엔, 약 24억불로 산출하고 있었다.⁴⁰⁾ 즉 장면 집권기 작성된 청구 액수는 이승만 집권기에 작성되던 배상요구 액수와 거의 똑같은 것이었다. 물론 이 액수의 존재 역시 제5차 회담 시의 정식 요구액이었음을 단순히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한국측은 <표 3>에 있듯이 반환근거의 강약, 증거자료 등의 준비 가능성을 문제로 삼아 청구액의 전부를 변제받음은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요구 액수는 필리핀에 대한 배상액 총8억불(순 배상액 5억5천만불, 경제협조 2억5천만불)보다 적어지지 말도록 할 것과 일본의 6억불 경제원조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에도 최소한 2억불 또는 3억불

37) 수석 간 비공식회담의 내용에 관해서는 張博珍, 앞의 논문, 313~318쪽.

38) 『주영대제 1041호』,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2 9~10월)』, 151~154쪽.

39) 경제건설과 청구권문제의 연관성은 박정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컨대 유진오 수석은 1961년 4월 기시(岸)전 수상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후 10년간에서 약 17억 정도의 외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 보고, 1960.10~61.5』, 2175쪽.

4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13차, 1960~61』, 841쪽. 다만 위의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제1항 지금·지은 분을 빼고 365.2억엔이다. 동 문서는 동 수치 산출 시의 지금·지은의 취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요구 근거가 약으로 돼 있는 것, 그리고 위의 자료의 수치가 약 366억엔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봐 요구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봐 무방하다. 한편 오오타(太田)는 다른 한국 측 문서를 이용해서 제5차 한일회담 당시의 한국 측 내부 산출 총액수가 지금 지은을 포함해서 약 18억6722만불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太田修, 앞의 책, 160~162쪽. 그러나 동 수치와 본론의 수치의 관계는 모른다.

은 순청구권으로서 받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위 구상자체는 그 후 장면 정권 하에서 정식한 방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사실 이세끼 국장은 상술한 61년 5월의 국회의원 방한 시 청구권으로서 5억불이 한국측의 요구였음을 한국측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⁴²⁾ 또 이 5억불이라는 수치는 그 당시 일본측 국회의원을 맞이한 김용주의 증언과도 일치한다.⁴³⁾

따라서 그 당시 장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청구권으로서 5억 그리고 남은 3억불 가량을 경제협력으로서 받을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액수는 최종 타결인 무상 3억불+정부차관 2억+민간신용공여 3억불=8억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위의 8억불이라는 액수 자체는 이승만 집권기의 자료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액수이다. 따라서 이 8억불과 이승만 집권기의 액수와의 관계는 불투명하고 혹시 그것이 장면 집권기 새롭게 나온 수치였다면 그 의미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된다. 또 그 근거가 필리핀보다 적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성격이 짙어짐에 따라 이승만 집권기의 구상보다 한 층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확인했듯이 이승만 집권기 그 청구권교섭에서의 구상으로서 약 19억불에서 4억불 가량의 액수범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5억불+3억불=8억불 가량이라는 액수는 확실히 이승만 집권기에 이미 상정돼 있던 액수범위 내에서 산출된 것만큼은 틀림없다. 이 의미에서는 장면 정권 하 확인 가능한 청구 액수는 이승만 집권기에 작성되던 액수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새로운 시도는 없었다고 풀이 된다. 액수의 표면적인 변화는 이승만 집권기의 액수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에 불과했던 것이다.

41) 위의 문서, 841~842쪽. 또 이 8억불에 관해서는 정일형도 64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의 청구액수가 비록 사안(私案)이나 8억불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으므로 공식문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국회의회의록, 제6대국회, 제41회, 제8차 국회본회의, 제8호, 1964년 4월 1일, 15쪽.

42) 「JW-0967」,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2 9~10월)』, 117~119쪽.

43) 김용주, 『風雪時代八十年 나의回顧錄』(新紀元社, 1984), 296~297쪽. 이 증언에서 또 주목되는 것은 이 5억불의 구성에 관해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이라는 후술할 김·오히라 합의의 내용이 이미 구체화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공식문서에서는 확인되지 못한다.

3. 박정희 집권기의 변화

1) 경제협력방식으로 인한 해결

이상 피해보상 교섭에 관해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과의 연속성을 논했으나 한일간의 피해보상 문제를 청구권방식으로부터 경제협력방식으로 전환시켜 해결시켰다고 이해되어 온 박정희 정권의 교섭은 전 정권 하의 교섭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 문제를 고찰하는 데 우선 박정희 정권은 동 문제 처리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희 정권은 재개될 제6차 한일회담을 앞둔 1961년 9월 중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신이 직접 참여한 토의에서 한일회담 조기 재개의 필요성을 이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⁴⁴⁾

- 최근의 북한괴뢰 정권과 소련 및 중공 간의 군사동맹 체결로 인하여 아국으로서의 더욱 반공체제의 강화가 필요한 바, 한일양국간의 전반적인 제휴는 한국의 반공 입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일관계 정상화는 현안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바, 이 경우 상당액의 변제금의 반환이 예측되는 데 동 금액은 한국의 국가경제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국교정상화 후는 경제협조 문제도 추진될 것이므로 국가경제 재건에 필요한 외자도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위 방침에서 보이듯이 한국정부에게는 이미 동 문제는 평화조약 4조에 기초한 청구권 처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반공안보와 경제건설을 위한 자금 도입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에 필요한 것은 청구권 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과 자료에 기초한 충분한 실무적 토의가 아니라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 도입의 신속한 실현이었다.

박정희 집권기 강조된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속전속결”⁴⁵⁾의 수법을 뜻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박정희 정권 하의 정치적

44) 『외정(아) 제274호』,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2 9~10월)』, 193쪽.

해결이라고 함은 이승만, 장면 집권기에 있던 법적 근거, 증빙절차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권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한 해결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하 논하듯이 하루라도 빠른 자금 확보를 위하여 실무자 토의를 거쳐 해결 가능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일괄 타결시키는 것이야말로 전 정권들과 다른 박정희 정권의 지향한 정치적 해결방법이었다. 실제 박정희 정권은 정권 장악 후 얼마 안 되는 61년 7월 “韓日會談에 對한 政府의 基本方針”을 작성, 청구권 문제에 관해 다음의 <표 4>와 같은 3안의 교섭방침을 세우고 있다.⁴⁶⁾

<표 4> 61년 7월의 “韓日會談에 對한 政府의 基本方針”

제1안	우리의 대일청구권은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한미간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최초협정, 대일평화조약 제4조항 등의 근거 하에 청구할 것이다. 따라서 배상적 성격의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사법상의 채무변제적인 성격을 가진 청구권으로 되어 있다.
제2안	미국무성은 1957년 12월 31일 한국의 대일청구가 일본의 재한재산의 귀속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소멸되어 있는가를 양국의 특별협약에서 토의해야 할 것이라는 각서를 내놓고 동 각서는 양 측에 의하여 수락되었는 바, 이 점을 고려하여 제2안에서는 법률적인 근거 및 숫자상의 증빙자료가 미약한 것은 청구안 중에서 삭제하기로 하다.
제3안	최종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청구권을 총합하고 정치적인 고려를 가미하여 일정한 절대 청구액을 확정하여 끝까지 고수한다.

동 방침 중 제3안이 사실상의 현실적인 최종안임을 감안하면 제3안에 있는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청구권을 총합하여 정치적인 고려를 가미하여 일정한 절대 청구액을...고수”라는 규정은 한국측이 최종적으로는 이승만, 장면 집권기의 교섭에 있던 청구권 부분+정치적 해결부분이라는 이분법적인 해결방법을 지양하여 필요한 절대액을 위하여 일괄 정치적으로 타결시키는 것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동 방침은 필요한 액수 확보를 위하여 온 항목에 정치적인 해결방법을 도입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방침에 따라 한국정부는 8월의 김유택 경제기획원 원장 파견 등 정치적인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제6차 회담 개최에 즈음하여 청구권 토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에 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훈령을 보내고 있다.⁴⁷⁾

45) 김동조, 앞의 책, 216쪽.

46)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1 7~8월)』, 52~54쪽.

47) 예컨대 제6차 한일회담 개시를 3일 앞둔 17일 한국정부는 증거대조 등의 사무는 신속한 진행을

그리고 8월의 김유택에 의한 정치적인 사전 절충과 이하 언급할 62년 3월의 제1차 정치회담에 실패하자 한국정부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술한 장면 집권기의 마지막 교섭무대이던 61년 5월의 국회의원 방한 시 일본측으로부터 전달되던 무상제공 방식, 즉 사실상의 경제협력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최종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심했다고 판단된다. 사실 한국측은 제1차 정치회담 결렬 1주 후인 3월 24일에 “앞으로의 韓日會談에 臨할 基本方針”을 작성하여⁴⁸⁾ 정치협상에 의한 타결총액을 늘리기 위하여 명목에 관해서는 청구권과 무상을 합쳐 다른 명분이 서는 이름을 붙여 해결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한국측은 이 시점에서 ‘청구권’ 방식으로 인한 해결을 최종적으로 일절 포기한 것이었다.

그 결과 타결된 것이 주지의 김·오히라 합의였다. 동 합의로 인해 청구권 문제는 무상, 정부차관, 민간차관이라는 구성으로 해결되었다. 이 의미에서는 동 교섭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청구권 명목으로부터 경제협력으로 인한 해결로 변화되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변화는 동시에 ‘연속성’ 위의 변화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실제 표면적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권과 경제협력방식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보조선’을 그으면 그 연속성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양국간에는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견해 차이와 그에 따른 재산권에 관한 각 항목마다의 지불의무를 둘러싼 대립이 있었다. 또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조건과 그것을 무릅쓰고 그 해결을 이룩하는 데에는 한국의 정치적 역량 부족이라는 현실이 있었다. 이런 엄연한 선행조건 아래 동 문제의 해결에는 명목과 상관없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해법이 출발부터 불가피했다.⁴⁹⁾ 실제 제1차 한일회담 시 청구권 요구로서 제출된 ‘대일8항목요구’ 중 제1항의 지불에 관해서는 정치적 해결이라는 요구가 나와 있었다. 또 장면 정권 하에서도 청구권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사실상

위하여 가급적 피할 것, 법적 이론에 관한 최종결론 또는 증거대조에 관한 결정적 언질들은 주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외정(아) 제118호』,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종합보고, 1961~62.2』, 111쪽.

48)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이후의 교섭, 1962.3~7』, 14~23쪽(46~55쪽에도 제수록).

49) 이 의미에서는 일본측 역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해야만 했다. 다만 일본측이 생각한 정치적 해결이라고 함은 일부 그 존재가 인정되는 청구권부분도 포함해서 모두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張博珍, 앞의 논문 제5장 제1절 2의 ‘나’에서 논했다.

정치적 해결부분의 확대를 도모하려고 했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하의 김·오히라 합의가 이루어낸 것은 장면 정권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던 정치적인 해결의 범위를 전 항목에 확장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의미에서는 한일회담 기간 중 일어난 청구권에서 경제협력으로 인한 해결이라는 방식변화는 질적인 단절이라기보다 법적근거와 증빙절차를 거쳐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극(極)으로부터 그런 절차를 빼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괄 지불하는 또 하나의 극으로의 연속적인 이동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⁵⁰⁾ 다시 말하면 이승만 집권기 그나마 전자에 가까웠던 위치가 그 후 장면 정권을 거쳐 박정희 집권기에 이르러서는 그 시대가 요구한 경제건설이라는 절대적인 지상명제를 위하여 또 하나의 극으로 옮겨가야만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에서 경제협력이라는 개념상의 ‘단절’은 주어진 구조적 조건 하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적 해결의 적용범위의 연속선상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물론 청구권에서 경제협력 명목으로의 변화는 일본의 자금공여가 재산권에 기초한 ‘환불’이 아니라 일본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뜻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양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권은 원래 일본의 한국지배의 성격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니만큼 가령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의 청산을 이룩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⁵¹⁾ 더 나아가서는 배상이라고 할지라도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대일 정책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이상 『대일배상요구조서』 제3항에 있었듯이 그 적용범위는 주로 제2차 대전 시기의 피해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배상 역시 식민지관계 자체의 청산을 결정적으로 가능케 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일어난 경제협력으로 인한 해결은 그 방식으로 인해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 불가능해졌다는 등의 단절된 변화를 낳은 것이 아니라 배상요구 시부터 이미 내포되고 있었던 식민지 지배 청산에 관한 한계 내에서의

50) 물론 논리적으로는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도 그 명목을 청구권으로서 지불한다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일본측 자세로 인해 현실적이지 않다.

51) ‘식민지 시대에 일어난 문제의 처리’와 ‘식민지 지배 자체에 대한 청산’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張博珍, 앞의 논문, 제2장을 참고.

변화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2) 액수의 변화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구상된 액수와 그 변화는 전 정권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앞서 논한 61년 7월의 세 가지의 청구권 방침에 맞추어 한국정부가 작성한 구체적인 요구항목 및 액수는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된다.⁵²⁾

<표 5> 61년 7월의 “韓日會談에 對한 政府의 基本方針”에 기초한 구제안⁵³⁾

	제1안	제2안	제3안
제1항 지금과 지은			
(가) 지금	2억5천만 ^瓦	양보	포기
(나) 지은	9천만 ^瓦	-	포기
1)조선지출(持出)분	7천만 ^瓦	양보	-
2)복지(北支)준비은행담보분	2천만 ^瓦	2천만 ^瓦	-
소계(小計)지금	2억5천만 ^瓦	-	-
지은	9천만 ^瓦	2천만 ^瓦	0
제2항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가)채신부관계 채권	20억8천만 ^엔	18억4천만 ^엔	7억 ^엔
ㄱ)과초(過超)금	15억	15억 ^엔	
ㄴ)국채 및 저축채권	1억4천만 ^엔	6천만 ^엔	
ㄷ)생명보험 및 우편 연금	3억1천만 ^엔	1억6천만 ^엔	
ㄹ)해외為替, 저금, 채무	7천만 ^엔	7천만 ^엔	
ㅁ)포고령3호에 의한 수취계정	5천만 ^엔	5천만 ^엔	
ㅂ)저축이자	1천만 ^엔	포기	
(나)8.9 이후 일본인 인출금원	26억7천만 ^엔	포기	포기
(다)일본국고 계정 상 채권	9억 ^엔	포기	포기
(라)조선총독부의 재일재산	1천만 ^엔	포기	포기
계	56억6천만 ^엔	18억4천만 ^엔	7억 ^엔
제3항 8.9이후 이체(移替) 송금된 금원			
(가)조선 지출(持出) 금원	2억3천만 ^엔	양보	양보
(나)재한 일계은행 송금 금원	6억6천만 ^엔	6억6천만 ^엔	3억 ^엔
계	8억9천만 ^엔	6억6천만 ^엔	3억 ^엔
제4항 한국 내 본사 법인의 재일재산			
(가)폐쇄기관의 재일재산	64억7천만 ^엔	30억 ^엔	양보
(나)()법인의 재일재산	2억		
계	66억7천만 ^엔	30억 ^엔	0

52)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1 7~8월)』, 55~61쪽.

제5항 기타 각종 청구권			
(가) 각종 유가증권	72억엔	70억엔	50억엔 및 1억불
(나) 일본계 통화	15억엔	15억엔	
(다) 피징용한인 미수금	2억3천만엔	1억5천만엔	
(라) 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	4억불	2억5천만불	
ㄱ) 피징용자	3억불	-	
ㄴ) 군인 및 군속	1억불	-	
(마) 은급청구	3억엔	3억엔	
(바) 한국인의 대일본 법인청구	4억7천만엔	포기	
(사) () 법인에 대한 청구	2천만엔	2천만엔	
계	97억2천만엔 및 4억불	89억7천만엔 및 2억5천만불	
총계	제1안	제2안	제3안
	229억4천만엔	144억7천만엔	60억엔
	4억불	2억5천만불	1억불
	지금 2억5천만 ⁵³	-	-
	지은 9천만 ⁵⁴	지은 2천만 ⁵⁴	-
미불 합계 (15:1로 환산)	19억3천만불	12억1천만불	5억불

이 시점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군사정부는 약 19억, 12억이라는 안도 작성했으나 제3안이 사실상의 최종목표임을 감안했을 때 정권 장악 후 2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인 일괄 해결 방식으로 최저액수 5억불을 목표로 정했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 수치는 군사정부가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상술했다시피 57년 초 무렵 이승만 정권은 약 19.32억불이라는 수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또한 5억불은 앞서 언급한 장면 집권기의 1961년 5월 국회의원단 방한 시 양국 사이에서 이미 교환되고 있었던 액수이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 요구액수는 군사정권 이전에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라고 추측된다.⁵⁴⁾

또 8월의 김유택 원장 방일에 의한 액수의 사전 조율 시 일본측에 요구한 액수는 위 세 가지 안에 없는 8억불이었으나 이것은 장면 집권기 이미 나와 있었던 정

53) 표 중의 제4항 (나)와 제5항 (사) 부분에 단 ()는 인쇄 불선명으로 인해 알아보기 못함을 뜻한다.

54) 제2안인 약 12억불은 전의 정권 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액수이나 바로 그 액수가 중간적인 값임을 생각하면 새 정부의 독자성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장일 것이다.

치적 액수임을 고려할 때 동 8억불은 청구권 부분에 관한 제3안의 5억불에 경제협력 부분을 더한 액수로 추측되며 따라서 이 수치 역시 전 정권 하에서 이미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2년 3월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고비가 된 제1차 정치회담이 정일권·고사까(小坂) 두 외상 간에서 열렸다. 한국정부가 그 제1차 정치회담에 임할 준비로 작성한 계획안은 이하 표시한 <표 6>이었다.⁵⁵⁾ 한국측은 <표 6>에 기초해서 동 외상회담에서 5억불을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그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⁵⁶⁾

□ 청구권 형식으로:

- 엔 표시 분: 10억(제2항)+6억(제5항 1)+15억(제5항 2)+2억(제5항 3)+3억(제5항 5)+0.58억(제5항 6)+2억(제5항 7)=38억58백만엔≒2.57억불
- 미불 표시 분: 1.8억불(제5항 4)

□ 무상원조형식으로: 5억엔(제1항)≒0.33억불(15엔:1불로 계산)

□ 미불 합계: 4.7억불(2.57억+1.8억+0.33억), 기타 약 0.46억불의 청산계정(OA)

위의 청산계정(OA)이라 함은 한국측의 대일 무역적자에 따른 지불책무를 뜻하는 것이며 그 수치는 보다 정확하게 그 당시 4,573만불 가량이었다. 따라서 동 요구 액수 5억불은 4.7억불 이외에 대일 무역적자 탕감 분을 포함한 총액 약 5.16억불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5억불은 61년 7월에 작성되던 최종 양보선이던 제3안으로서 이미 정해졌던 액수인 만큼 한국측은 시급한 타결을 위해 이 제1차 정치회담에서 액수에 관해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일견 각 항목마다 실무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동 5억불은 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꾸며진 것이었다. 즉 제3안의 방침에 있던 “일정한 절대 청구액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필요한 외자 소요액이었다. 한국정부는 대일청구액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5개년 계획에서 소요되는 외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55)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V.2 최덕신·고사까(小坂)외상회담, 1962.3.12-17)], 25-26쪽. 다만 제2안, 제3안은 생략했다.

56) 제1안에 관한 보다 보기 쉬운 내역 표는 위의 문서, 55-56쪽에 수록. 다만 그 표에서는 제1항은 “6억”으로 표기돼 있으나 다른 표와의 대조로 “5억”으로 했다.

고 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총 소요외자액수 24.16억불 중 4.7억불을 아직 충족전망이 없는 결손액으로 간주하고 있었다.57)

<표 6> 제1차 정치회담에 임할 한국측 청구권에 대한 방침

	청구내용	우리측 제시액 (태도)	일본측 태도	해결방식	제1안
1	지금	249톤	청구근거 없음	무상원조	5억엔
	지은	67톤			
2	(채신부관계) -우체국 예금 -간이보험 및 연금 -해외이체 및 저금 -동결 수취 금	12억 1.3억 0.7억 0.4억	3.7억 1억 태도불명 태도불명	청구권	10억엔
3	이체 국채	제5항 국채와 합변토의	좌측과 같음	-	좌측과 같음
4	(재일지점 재산) -폐쇄기관 관계 -SCAPIN1965 관계	전 재산청구 (자료제시 요구)	한국인 지분만 인정?	청구권	한국인 지분만 청구(0.4억엔)
5	1.각종 유가증권	87억	개인소유 분은 현물 제시 조건으로 인정	청구권	6억엔
	2.일본은행권	15.2억	비 입회(立會) 소각 분, 군 표, 중앙 준비 은행권 등은 지불 어려움	청구권	15억엔
	3.피징용자 미수금	2.3억	근거 있는 액수만 지불	청구권 무상원조	2억엔
	4.피징용자 보상금	3.6억불	-미수금과 같이 취급 -생존자분만 불인정 -미수 관계 자료와 대사	청구권 무사원조	1.8억불
	5.은급	3억	-미수금은 인정 -국적상실 시가 문제	청구권 무상원조	3억엔
	6.귀환자 기탁금	1.1억	조건관계 분 불인정	청구권	0.58억엔
	7.생명보험	4.5억	제6항과 포괄 토의	청구권 무상원조	2억엔
6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또는 개인에 대한 청구	1.제5항까지 포 함되지 않은 청 구권은 인정	1. 구체적인 태도 회피 2. 소송의 복잡화를 고려	-	주장관철

57) 「외자 수요액 획득예상표(1)」, 위의 문서, 52쪽. 다만 5억불은 장면 집권기에 이미 나타났었던 액 수입을 생각하면 그 5억불을 일본으로부터 받을 것을 전제로 결손액을 4.7억불 정도로 한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2.시효의 중단 (회담타결까지)			
7	이자 청구	회담 체결까지 분	구체적인 태도 표시는 없 으나 부정적	-	양보
8	변제기간	양측간 특별 협약	좌측과 같음	-	변제3방식 고려 하에 협의
기 타	한일간 청산 계정 문제	-	청산 요구	-	재산 청구권 해결 시 면제

한국정부는 바로 이 4.7억불이야말로 “5개년 계획을 수행 상 절대적으로 확보 하여야 할 액수”로 지적, 대일교섭 상 “우리 측 청구액수의 최저라인 설정에 있어 서 중요한 ‘바로미터’”로 규정하고 있다.⁵⁸⁾ 5억불은 위 4.7억불과 청산계정 탕감 분도 포함하여 내려진 정치적 액수이었던 것이다.

다만 실제 제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시한 액수가 7억불이었음은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치는 정치회담에서의 일본측 소극적인 태도에 접한 한국 대표단이 일본측의 소액 제시를 우려, 본국에 대한 청훈을 통하여 제시 예정이던 5억불의 액수를 급히 늘린 것이므로⁵⁹⁾ 위의 방침과의 모순은 없어 보인다.

결국 일본측 제시 액수 청구권 7000만불, 차관 2억불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동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측은 62년 3월 24일의 “앞으로의 韓日會談에 臨할 基本方針”에 따라 청구권 개념의 상용을 최종적으로 단념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62년 11월의 김·오히라 메모에 의한 양국 합의였다. 제1차 김·오히라 회담 당초 한국측의 최종 타결액수는 합계 6억불 이상 그 속에서 순변제+무상 항목으로 3.5억불 받는 것이었다.⁶⁰⁾ 그러나 결국 제2차 회담 결과 무상3억, 유상 2억, 민간차관 1억 합계 6억불, 그리고 그 후 막판 교섭에서 민간차관 부분을 2억 더 늘려 합계 8억불로 되었음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액수에 관해 박정희 집권기 새롭게 변화된 것은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58) 위의 문서, 47쪽.

59) 제시액수를 갑자기 늘렸다는 사실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第1次 韓日政治會談의 分析과 今後의 韓日問題에 關한 建議』,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이후의 교섭, 1962.3~7』, 192쪽.

60) 합계 6억불은 『對日折衝에 關한 훈령』, 『김종필 특사 일본방문, 1962.10~11』, 32쪽. 순변제+무상 항목 3.5억불은 『各懸案問題解決에 對한 우리의 立場』, 동 문서, 59쪽.

판단된다. 계획안에 있던 최대액수 19억불 가량의 액수 역시 이승만 집권기에 이미 확인 가능한 액수이며 청구권 부분으로서 받으려고 한 5억불은 이승만 집권기에 이미 나돌고 있던 4억불 이상의 액수이자 장면 집권기 일본측에 비공식적으로나마 전해지고 있었던 액수이기도 했다. 또 합계 8억불 역시 청구권 부분과 경제협력 부분을 합친 액수로서 장면 집권기에 한국정부 내부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박정희 정권은 결국 이들 전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액수의 범위를 넘는 등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일은 없었던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경제협력 방식이라는 표면상의 변화와 달리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액수의 움직임은 이승만 집권기로부터 자리 잡아 온 범위 내에서의 변동에 불과했던 것이다.

III. 결론

이상 이승만, 장면, 박정희라는 세 정권 하 일어난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을 분석했다. 표면상에 나타난 개념상의 큰 변화와 달리 배상에서 청구권, 그리고 경제협력방식으로서 이어져 온 동 교섭은 실은 재산권에 기초해서 법과 증빙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환불방식과 그 방법을 피해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 해결의 적용범위의 변화에 불과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 단절된 변화는 없었으며 한일간의 식민지 관계 처리의 성사에 관해 그 개념상의 변화로 인해 질적인 차이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강조되었듯이 배상에는 전쟁 시의 전투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의 항목이 들어가거나 또 청구권은 경제협력방식에 비해 그나마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는 의미가 있다는 등의 차이가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일간의 과거처리 문제는 원래 1910년에 시작된 식민지 지배관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는 점, 또 한일 양국은 제2차 대전 시 본격적인 교전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전투 행위에 따른 배상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배상 수취자격 상실에 따라 한일간의 과거 처리가 결정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되었다는 등의 추론은 설득력을 잃는다.

청구권 개념 역시 이것이 한일간의 특수한 지배·피지배 관계 자체의 청산이라기보다 재산권에 기초한 채권의 반환문제이니만큼 이 방식으로 인한 처리의 실현이 식민지 관계의 청산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점들을 생각할 때 경제협력에 의한 식민지 관계 청산의 미흡함은 실은 배상요구 시부터 이미 내포되던 연속적인 한계의 틀 안에서의 변화에 불과했다고 말해야 하겠다.

이런 연속성은 액수의 변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당초 배상요구로서 약 24억불 가량이던 대일 요구 액수는 실은 청구권 개념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것은 1957년 초 이승만 집권기 작성된 약 23억3000만불 가량의 수치에도 볼 수 있고 또 장면 집권기의 60년 10월쯤의 요구액수 약 24억불 역시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한일회담의 진전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액수는 5억불 가량까지 감소했으나 이 사실 역시 경제협력 방식이라는 처리방식의 변화에 따른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근거로서는 우선 당초 배상 요구액수 24억불 가량의 요구 자체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액수가 아니므로 그 수치를 액수 감소의 현실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또 이승만, 장면 집권기 청구권방식에 의한 해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배상요구와 거의 차이 없는 액수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 거꾸로 일본의 ‘역청구권’이 포기되고 나서 청구권 문제의 타결이 현실적인 과제로 된 제4차 한일회담 시에는 청구권방식에 의한 해결 요구로서 4억불 가량까지 이미 감액돼 있었던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 장면 집권기 5억불은 이미 한국측의 최종 요구액이었다는 점, 그리고 박정희 정권 하 제1차 정치회담의 실패로 인해 정식한 청구권 명목의 포기가 결정되기 전부터 5억불이 이미 최저 목표로 되었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결과로서의 액수의 감액은 해결 방식의 변화에 따른 변동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한국측의 필요액수라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인해 구체화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하면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이라는 해결방식의 변화가 액수에 관해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상 한일간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는 그 개념상의 단절과 달리 밀접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 해결방식의 변화가 식민지 관계라는 특수한 과거관계의 청산 성사에 근본적인 차이를 낳은 일은 없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한일회담 예비회담(1951.10.20~12.4), 자료집,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
- 『제1차 한일회담(1952.2.15~4.21)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8차, 1952.2.20~4.1』.
- 『제2차 한일회담(1953.4.15~7.23)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차~3차, 1953.5.11~6.15』.
-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1~3차 한일회담 결렬경위, 1953.10~12』.
-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56~58(V.1 경무대와 주일대표부 간의 교환공문, 1956~57)』.
-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회의록, 제1차~3차, 1958.5.20~12.17』.
-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1958~60』.
- 『제4차 한일회담(1958.4.15~60.4.19) 청구권관계자료, 1958』.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 보고, 1960.10~61.5』.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1~13차, 1960~61』.
-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1 7~8월)』.
-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 전2권(V.2 9~10월)』.
-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회의록 및 종합보고, 1961~62.2』.
-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V.2 최덕신·고사까(小坂) 외상회담, 1962.3.12~17)』.
-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담이후의 교섭, 1962.3~7』.
- 『김중필 특사 일본방문, 1962.10~11』.
- 外務部 政務局, 『韓日會談略記』. 1960.
- 국회회의록, 제6대국회 제41회 제8차 국회본회의. 1964년 4월 1일, 제8호.
- 김동조, 『회상 30년 한일회담』. 서울: 中央日報社, 1986.
- 김용주, 『風雪時代八十年 나의 回顧錄』. 서울: 新紀元社, 1984.
- 俞鎮午·劉彰順, 「對談: 交渉十年 會談六回の 内幕」. 《思想界》 1964년 4월호, 30~39쪽.
- 柳泰夏, 「李라인과 對日會談, 權五琦(편), 『現代史주역들이 말하는 정치증언』. 서울: 東亞日報社, 1986, 337~394쪽.
- 林炳稷, 『林炳稷 回顧錄』. 서울: 女苑社, 1964.
- 張博珍, 「韓日會談에서의 植民地關係 清算研究: 清算消滅의 政治論理를 中心으로」. 韓國外國語大學 校 國際地域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 정일형, 「외 朴政權의 韓日會談을 反對했다」. 《新東亞》 1984년 10월호, 268~291쪽.

한국일보사, 『財界回顧(10): 歴代金融機關長篇(II)』. 서울: 한국일보사출판국, 1981.

太田修, 『日韓交渉 請求権問題の研究』. 東京: クレイン, 2003.

外務省, 『わが外交の近況』. 第5号, 東京: 大蔵省印刷局, 1961年 8月.

佐々木隆爾, 『アジア太平洋戦争の戦後補償のために支払った金額』. 『日本史研究』 388号, 1994年 12月, 193~207頁.

塚元孝, 『韓国の日平和条約署名問題: 日朝交渉 戦後補償問題に関連して』. 『レファレンス』 no. 494, 1992年 3月号, 95~100頁.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Japanese External Assets, 1945." 大蔵省財政室(編),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第20卷(英文資料), 東京: 東洋経済新報社, 1982, pp. 431~43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VI, *Asia and the Pacific*, Part 1.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국문 요약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피해보상의 문제에 관해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동 문제가 배상에서 청구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협력이라는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또 그에 따라 한일간의 과거처리에 큰 차이가 생겼다고 평가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한일회담은 14년 이상에 걸쳐서 이승만, 장면, 박정희라는 세 정권 하에 이루어진 결과, 그 변화가 각 정권의 속성과 맞물려 일어났다고 하는 이해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동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 표면적인 변화의 뒤에는 강한 연속성이 숨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본고는 동 문제의 연속성을 밝히기 위하여 해결방법과 액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전자는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이라는 해결방식의 표면적인 변화와 달리 동 교섭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는 일관성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피해보상 교섭의 연속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며 또 후자인 액수 분석 역시 그런 명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 교섭이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위 분석을 통해서 여태까지의 지배적인 이해와 달리 동 문제의 해결방식의 변화가 한일간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에 질적인 '단절'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 투고일 : 2008. 1. 7.

● 심사완료일 : 2008. 2. 28.

● 주제어(keyword) : 배상방식(reparations), 청구권방식(claims), 경제협력방식(economic aide), 액수(amount), 연속성(continuity).